

#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 
번 호 9433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5.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무역보험사업의 재원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음.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제도 운영의 기본재산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2항 신설).

##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기금의 관리)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	제32조(기금의 관리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</u> <u>회계처리한다.</u>